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4. 2. 16.>

| 승인번호 제 호 | 유효기간<br>발급일부터 180일 |
|---|---|

# 유입주의 생물 수입·반입 승인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상호(성명) | | 연락처 | |
| | 주소(시설 소재지) | | | |
| 기본정보 | 원산지 | | 수출국 | |
| 해당 생물 정보 | 학명 | 형태 | 수량<br>(단위) | 용도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관리방법 | | | | |
| 승인조건 | | | | |

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유 역 환 경 청 장

(지 방 환 경 청 장) 직인

준수사항

1. 용도, 수량과 승인조건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생태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20g/㎡)